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칙

2013. 8. 6. 제정

2017. 3. 20.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직원 행동강령」 제32조에 의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임·직원(퇴직자 포함)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공제회 임·직원(퇴직자 포함)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고발주체) ①실·부책임자와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제회 임·직원(퇴직자 포함)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사장 또는 감사는 제2조에 의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 및 이 기준에 의하여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①이사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3. 범죄의 내용으로 볼 때 파급효과가 크고 수사 과정에서 비위(非違)의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범죄의 횡수와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고발하여야 한다.

1. 뇌물관련 범죄의 경우 그 수수액이 200만원(누계금액)이상이거나 최근 3년 이내 뇌물수수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뇌물관련 범죄를 범한 경우
2. 공금횡령 범죄의 경우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이거나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제4조의2(의무고발) 의무 고발대상은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금품관련 부패행위외 채용, 근무평정, 계약 등의 직무와 관련되어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신설 2017.03.20.](#)]

1. 임직원
2. 임직원이었던 사람
3.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따라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발한다.

②고발은 이사장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감사담당 부서장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이사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231호, 2013. 8. 6](#)>

이 규칙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294호, 2017. 3. 20.](#)>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의무고발에 대한 적용례) 신설된 제4조의2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최초로 발생하는 의무 고발행위부터 적용한다.